

의안번호	제502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2회)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19일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2
----------	-----

발의연월일 : 2013년 6월 19일

발의자 : 김종필, 이광진, 강현삼,  
김영주, 김재중, 박문희,  
임헌경 의원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2012. 8. 23. 시행)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추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추가(안 제4조)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 2)
  -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영 개선방안 권고 사항
- 다. 재난관리기금 분임 기금운용원 지정(안 제7조)
  - 분임 기금운용원 : 재난업무 담당과장
- 라. 위촉직 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 신설(안 제10조2)
- 마. 띄어쓰기와 용어를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규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7.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

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13. 6. 4. ~ 6. 18.)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1의”를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퍼센트이하”를 “5퍼센트 이하”로,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를 “후 3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 상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거치기간중”을 “거치기간 중”으로, “받은자가 상환기간내”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정하는 제”를 “정하는 모든”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 기금운용원 : 재난업무 담당과장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제1항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를 “충청북도 재  
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이내”를 “1  
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  
다”를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위원회의심의사항)”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별표(기존 별표1) 중 제2호가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u>별표1</u>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 ----- ----- --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u>정한</u> ----- ---</p>
<p>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 ① (생략)</p> <p>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u>3천만원</u>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p> <p>③ 용자금의 금리는 <u>5퍼센트</u>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용자기간은 2년거치 <u>3년</u> 균등상환으로 한다.</p> <p>④ <u>거치기간</u>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용자 <u>받은자가 상환기간</u>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p>	<p>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3천만원 이하----- ----- -----.</p> <p>③ ----- <u>5퍼센트</u> 이하----- ----- 후 3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 상환한다.</p> <p>④ <u>거치기간</u> 중----- ----- 받은 사람이 <u>상환기간</u> 내-----</p>

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충청북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

-----  
-----  
-----  
--.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  
-----  
-----  
----- 정하는 모든 -----  
-----.

제7조(회계공무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분임 기금운용원 : 재난업무 담당과장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정한 회계공무원-  
-----  
-----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 충청북도

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 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⑥ (생략)

<신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

② -----  
----- 10명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  
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  
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생략)

<신설>

축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연도-----  
----- 연 2회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4조 관련)

현행	개정안
<p>[별표1]</p> <p>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li> </ul> </li> <li>나. (생략)</li> </ul> </li> <li>3. ~ 6. (생략)</li> </ol>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u>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u></li> <li>8. <u>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li> </ol>	<p>[별표]</p> <p>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li> </ul> </li> <li>나. (현행과 같음)</li> </ul> </li> <li>3. ~ 6. (현행과 같음)</li> <li>7. <u>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u></li> <li>8. <u>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u></li> <li>9. <u>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li> </ol>

## 관 계 법 규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 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

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 15. (생략)

##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서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매년 3회 개최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결산)
- 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3명)

구 분	수 당	산출기초	예산액 (천원)	비 고
			390	
위원회 운영수당	출석수당(1회)	○ 70천원x3명 = 210천원	210	
	안전심사수당(2회)	○ 30천원x3명x2회=180천원	180	

## 현행조례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2005-02-04 조례 제 02848호  
(일부개정) 2005-11-18 조례 제 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06-06-30 조례 제 2938호  
(일부개정) 2006-12-22 조례 제 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01 조례 제 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08-11 조례 제 32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 3338호  
(일부개정) 2012-01-13 조례 제 3437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 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2조 삭제<2011.2.11>

제3조(기금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 1. 13>[전문개정 2011.2.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1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 1. 13]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 ①도지사는 영 제7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2.11>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2.11, 2012. 1. 13>

③ 융자금의 금리는 5퍼센트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개정 2012. 1. 13>

④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충청북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2.11, 2012. 1. 1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제9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2.1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 1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2.11, 2012. 12. 28>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2, 2008. 7. 1, 2011.2.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6. 30>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2.11>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삭제<2011.2.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557호, 2000. 2.21) 및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771호, 2003.10.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1 조례 제3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3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